

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9년 2월 19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“성북구 성북동(330-115번지 외 3필지) 소재 삼청각 전통문화시설(10,687㎡) 민자유치 기부채납의 건”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“성북구 성북동(330-115번지 외 3필지) 소재 삼청각 고품격 전통문화시설(10,687㎡) 민자유치 기부채납의 건”은 삭제하고,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함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의결주문 중 “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·보강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성북구 성북동 330-115번지 외 3필지 소재 삼청각을 고품격 전통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물(10,687㎡)을 기부채납 받고,”를 삭제한다.

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  - 취 득(1건)
  - 기부채납(1건) : 건물 32,804.74㎡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

서울의 공연사업 발전 및 대중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전문공연장인 창동 복합공연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물(32,804.74㎡)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려는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-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  - 취 득(1건)
  - 기부채납(1건) : 건물 32,804.74㎡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

##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요약

구	분	내			세	부	내	용
		건 수	수 량(㎡)	금 액(천원)				
계	토 지	-	-	-				
	건 물	1	32,804.74	73,155,000				
취득	매 입	-	-	-				
	건물 신증축	-	-	-				
기부채납	토 지	-	-	-				
	건 물	1	32,804.74	73,155,000			○ 창동 복합공영장 기부채납(1)	
처분	토 지	-	-	-				
	건물	-	-	-				

# 취득대상재산목록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구분	재산의 표시			수 량	예 정 가 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 및 방 법	소 관 부 서	비 고
		구	동	번지						
계	건물				32,804.74	73,155,000,				
1	건물 (기부채납)	도봉구	창동	1-6	32,804.74	73,155,000	2012	창동 복합공영장 기부채납	문화정책과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